

공고 제 279 호

단기 4292 년 9 월 23 일

미아제 2 공동묘지 가족묘지 이장외건

위생과

166

9-1

국립묘지사업법 제24조

919

29



지반... 년... 일... 고... 제... 호... 의...  
기위... 장... 이... 된... 의... 나... 재... 가... 주... 보... 지... 가...

현... 조... 지... 되어... 있어... 동... 사업... 추진... 의... 지... 장... 을... 조... 래...  
제... 함... 으... 로... 동... 지... 여... 너... 에... 있어... 는... 본... 보... 들... 「墓... 史... 葬... 場...」

及... 史... 葬... 場... 規... 則... 第... 十... 八... 條... 及... 第... 十... 九... 條... 精... 神... 』... 에... 의... 거...

일... 정... 한... 기... 간... 을... 정... 하... 여... 별... 안... 라... 여... 히... 공... 고... 를... 하... 고... 기...

간... 너... 에... 연... 고... 라... 따... 는... 관... 리... 적... 로... 하... 여... 음... 이... 장... 조... 처... 케...

하... 여... 만... 약... 기... 간... 너... 에... 하... 등... 의... 신... 고... 영... 함... 이... 이... 장... 치... 양... 은...



3. 지출 방법      직 분

(과)    액의 조성비

(항)    사무비

(목)    수선비 및 수수료

(절)    수수료

안 =

서울특별시공고 제 27호

상시성부구비 <sup>동제</sup>공용보지(가주보지) 및 동지역내  
에 있는 사유지의 분묘는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묘지화장장비장비화장취체유체제 18조 및 제

21조 등에 의거 화기화여회 이상키로 결정하였

은 이 분 지역내에 매장한 분묘의 연고자 또는

정려후안가기

차고

시누리내기

시누리내기

제일대기

관리자는 조장기 일내에 이장할 것을 공고한 다

반약 아쟁기 간내에 이장화리 양는 분포는 무연본  
표로 간주하고 각시에서 개장한 다

안기보인년九월일

서울특별시장 임종문

기

사무지위위지

1. 서울특별시 행정부 부회아용산구구의 1. 산구구의

2. 산구구의 2. 산구구의 3. 산구구의 4. 산구구의 이상

서울특별시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위생의 장

공보의 장

동 건

수제 건이 관하여 알았사면 제 주지시키고  
하오나 별의 공고문 내용을 갱신문에 발표하여

주임을 바랍니

(공고문 첨부)